

I

개인정보처리자

**주제 I -1**

공동 개인정보처리자 인정 여부

## 1. 질의 요지

○○회사, △△회사, □□회사 등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중복가입자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본인확인 조회시스템을 만들어 DI(Duplication Information; 중복확인 정보)값을 제공하고 조회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 배경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26조에서 공동 개인정보처리자(joint controller)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동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해석이 필요함.

## 2.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이 명문으로 공동 개인정보처리자의 요건 및 법적 효과를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공동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공동 개인정보처리자 상호 간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DI값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3. 이유

GDPR의 데이터 컨트롤러(data controller)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수단을 결정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Art.4(7)). 같은 맥락에서, 공동 컨트롤러(joint controller)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수단을 결정하는 자이며 공동 컨트롤러 모두가 개인정보를 실제로 접근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ECJ, Wirtschaftsakademie Schleswig-Holstein GmbH(Wirtschaftsakademie) Case C-210/16). 그러므로

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서 공동 컨트롤러의 존재를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 컨트롤러 개념은 다수의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가 쉽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이]를 위해 공동 컨트롤러들은 정보주체에게 그들 사이의 협의(arrangement)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Art. 26)], 공동 컨트롤러의 경우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컨트롤러가 동일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 컨트롤러 각자가 그 손해 전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Art. 82.4). 즉, 공동 컨트롤러 개념의 취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컨트롤러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 컨트롤러의 내부 관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특례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GDPR 및 관련 문헌에서 공동 컨트롤러 상호 간의 개인정보 이동을 개인정보 처리로 보지 않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처리 근거(legal basis)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 이사회) 의견서는, 공동 컨트롤러들은 자신들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Guidelines 07/2020 on the concepts of controller and processor in the GDPR, para. 166, 167). 다만, GDPR은 제3자 제공의 경우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하여 더 넓게 법적 처리 근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동 컨트롤러 내부의 데이터 이동을 별도의 법적인 데이터 처리로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개념 및 실제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떠한 경우를 ‘공동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나아가 ‘공동 개인정보처리자’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어떠한 법적 효과를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견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에 따라 ‘공동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과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 DI와 같은 고유 식별성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GDPR Art. 4(7), 26, 82.4

## 주제 I-2

### 공동주택의 개인정보처리자

## 1. 질의 요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상황별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이들 각각이 개인정보처리자인가?

### 질의 배경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해당성 여부에 따라 목적 외 이용/제공 등의 적법한 처리 기준이 달라지기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함

- 입주자대표회의: 자치 의결기구로서 관리비 운영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함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함
-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함

## 2.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사무소, 위탁 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각각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이 정한 바에 따른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를 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행위 주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위 주체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 등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업무를 집행(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관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li> <li>②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li> <li>③ 주택관리업자</li> <li>④ 임대사업자</li> <li>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li> </ul>

이 중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치 의결기구이며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업무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은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등이 정한 업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각각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이 정한 바에 따른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8쪽, 104쪽). 헌법재판소는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2022. 9. 29. 2020, 헌마1204)'에서, "빌딩 관리단은 빌딩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구분소유자관리카드 등의 형식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빌딩 관리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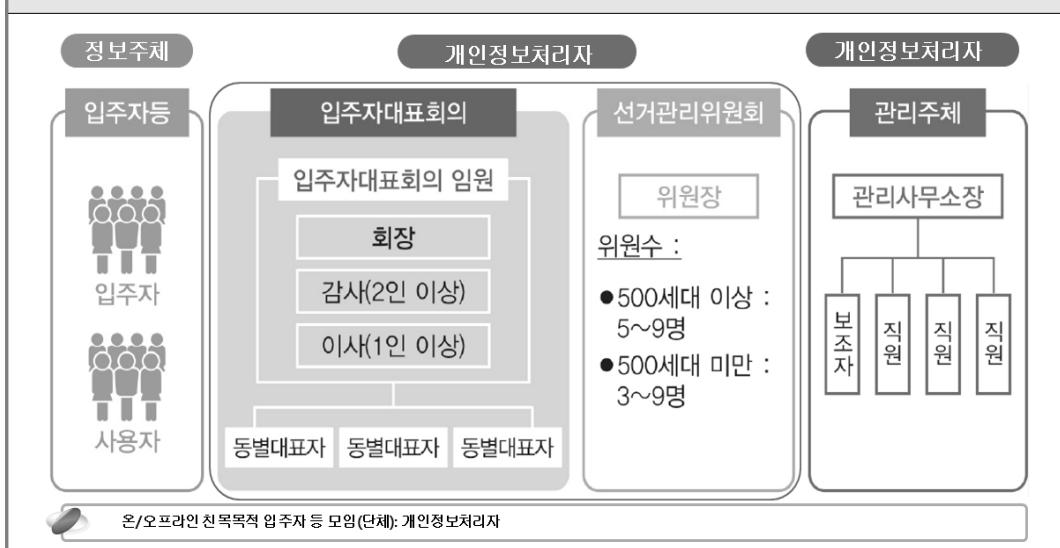
### | 결정례 | 빌딩 관리단 대표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죄는 그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인 빌딩 관리단 대표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위 죄가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빌딩 구분소유자들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빌딩 관리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빌딩 관리단은 빌딩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구분소유자관리카드 등의 형식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빌딩 관리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빌딩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빌딩 관리단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인 청구인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역시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해석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388 판결).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행위 주체별 개인정보처리자 구조도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그 구성 및 운영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와 독립적이므로 이들과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공동주택관리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근로관계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피용자로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보호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자치관리 형태의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관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되는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가 되고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의 피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업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취지에 따라 수탁자인 주택관리업자에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가능하나,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은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적인 일정 범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는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 | 판례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도8766 사건의 환송 전 원심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할 수 없어 제71조 제5호 및 제59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판결(2015도8766 사건)에서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을 것임에도, 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결론적으로, 자치관리,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 간섭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이 정한 바에 따른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제5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65조

# II

## 개인정보 수집·이용

**주제 II-1**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1. 질의 요지

식당 또는 행사장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앱 설치 또는 카카오톡 친구 맷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문배달, 예약접수 등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증가 및 IoT 기술 발달로, △열린장터(오픈마켓) △주문배달 △이동 수단(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의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위치정보나 앱(application)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앱 설치를 강요하거나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해야 하여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2.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거나 정보주체가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앱의 설치 또는 SNS 연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 3. 이유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제공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앱의 설치 또는 SNS 연결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그로부터 위치, 프로필 또는 배경 영상, 이름 또는 별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에게 앱의 설치 또는 SNS 연결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선택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선택적으로 동의 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거나 정보주체가 목적 외 이용·내지 제3자 제공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

식당 또는 행사장의 운영이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앱 설치 또는 SNS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그 설치 또는 연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16조 제3항, 제22조 제5항

**주제 II-2**

홍보/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1. 질의 요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 후 유사 서비스에 대한 광고 전송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홍보/마케팅 광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근거해 유사 서비스에 대한 영리목적성 광고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됨

## 2. 답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는 이용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가 없는 한 거래관계 종료일부터 6개월간 동종의 거래관계에 대한 광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호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자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 안내하는 것

#### 참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라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제50조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 수신자가 보유하는 통신수단으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일체의 매체)를 말함.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13호에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영리:** 법인의 성격으로서의 “영리” 여부가 아닌 그 행위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 전체로 보아야 함. 계약관계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주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서 ‘영리’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영리’의 개념(의익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지 여부)과 다르며, 비영리법인이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라 하여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광고성 정보가 전송자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예: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하단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이메일 전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봄)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함.
- 다음의 하단 박스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

1.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2.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3. 기타: 위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에 아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보로서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수신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클릭 등)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를 취해 전송하는 경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요청 정보

#### ■ 전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예: 수신자의 사적 영역인 휴대전화, 이메일 등에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 수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보게 되는 배너 광고나, 방송프로그램 시청 시 보게 되는 TV 광고 등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지 않음.

#### ■ 명시적인 사전 동의: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함.

※ 사전 동의 방식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전송자는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 동종의 재화 등: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것으로 수신자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의미함.

출처: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제5차 개정판 12~48쪽 참조

한편 마케팅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며, 이 중 광고/판매/유통/촉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의 유형별 구분〉

구분	주요내용	예시
광고(advertising)	SNS, 미디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신문광고, TV광고, 인터넷광고 등
판매(sales)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	판매사원,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AI 판매자 등
유통(distribution)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도매상, 소매상, 편의점, 대형마트, 시장의 상점들,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 유통채널
촉진(promotion)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할인 행사, 이벤트, 쿠폰발급 등의 다양한 활동	할인행사, 경품 지급 등 이벤트, 쿠폰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단순히 업무의 편의를 위해 “홍보·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마케팅의 범위가 위와 같이 광범위해서 법의 정확한 적용을 통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중 광고 전송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되므로, i) 광고 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연락처가 수신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에 해당하고, ii) 전송하는 광고가 이전 거래 내용과 동종의 재화등에 관한 것이며, iii) 거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 정보 전송인 경우 정보주체가 홍보/마케팅 광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광고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사후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제한되므로(「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 있어서도 광고 정보 전송 이후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는 광고 정보를 전송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 제15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주제 II-3**

근로자 채용 단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 1. 질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경력자를 모집하며, 이전 직장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력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 절차와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경력자(또는 학원 경진대회 입상자 등)의 경력 확인을 위해 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이전 직장으로부터 제3자 제공 형식으로 수집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됨

## 2.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경력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거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4호). 다만,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정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22조 제3항).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 3. 이유

개인정보처리자는 채용 준비 단계에서 적절한 인재 선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결정 및 보호 계획을 수립하며, i)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ii)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 회사가 취업지원자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지원자의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적법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주민등록번호 제외)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집해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 참고 | 전형단계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예시)

전형단계*	수집정보
전단계 공통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서류전형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보유여부, 연구실적, 경력 등
필기시험	필기시험 과목별 성적 등
면접	인성, 기타 경험, 경력 및 학업내용, 포부 등
신체검사	직무 수행가능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정보 등

\*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직무특성 및 선발방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입사지원 시에 수집하는 것은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 소지

\*\* 가족수당 지급에 필요한 가족관계 정보 등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12쪽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3년 3월 14일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동의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하되, 계약이행 등과 같이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제15조 제1항 제4호 등을 개정해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쪽 참조).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상호 간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5쪽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 허위 경력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계약체결 이후 경력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호

## 주제Ⅱ-4

### 근로자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 1. 질의 요지

재택근무·유연근무제의 도입 또는 외근 직원에 대한 근태 관리나 유류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질의 배경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 2. 답변

회사가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목적으로 기지국, GPS, Wi-Fi, Beacon 등의 측위설비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개인정보처리자)가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출퇴근 기록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이 정한 바에 따른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는 「위치정보법」이 정한 위치정보에 해당하기에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해야 합니다.

### 3. 이유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계약 이행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i)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ii)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iii),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3항)하므로 어느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지 사전 검토 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5쪽 참조).

※ 전보·파견·휴직, 인사평가, 복리후생 제공 등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거주지·전문분야·경력·성과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근로자의 동의 불필요(단, 노조가입 여부 등 민감정보·고유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며,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sup>1)</sup>

#### | 결정례

#### CCTV를 통한 직원 근태관리는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 충족 필요<sup>2)</sup>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조에 목적의 명확화, 필요 최소한의 수집, 목적 외 활용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결국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수집과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은 CCTV, 전자 카드, 지문인식, 위치추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세밀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전자감시가 가능한 현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를 활용한 근로 감시와 관련하여 2007년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업장 전자감시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마련, 근로관계 법률상 전자감시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등을 권고(2007. 11. 12. 결정)한 바 있으며, 2016년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2016.12. 27.)한 바 있다.
- 또한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장이 무단 외출 여부를 확인한다며, ○○우편집중국에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요청해 이를 제공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동의 없이 직원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16진정0959300, 2017. 2. 8.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한 바 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19쪽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2017. 9. 28.자 결정 16진정04642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CCTV를 이용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법령해석에서 수집된 녹화물을 CCTV 설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버스회사가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버스 안에 설치한 CCTV는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결정(2013. 5. 27.)한 바 있다.
- 진정인의 비위 사실 등을 적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하는 날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영상자료를 확보한다면,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파출소 직원들의 평상시 근무 모습이 감사 주체에게 가감 없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무태도 감시'와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복지 제공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더욱 중요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수집 항목, 근로자의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 등에 관한 사항, 보유기간, 퇴직 후 근로자 정보의 처리 절차 등)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89~90쪽 참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3항).

#### | 참고 | 명백성 판단(예시)

회사가 업무효율성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직원의 업무처리 내역 및 인터넷 접속내역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정보주체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경우는 노사 협의에 따라 처리하거나 직원에 대한 고지 또는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92쪽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처리할 때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법<sup>3)</sup>이나, 위치정보<sup>4)</sup>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기에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자는 「위치정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위치정보 중 개인위치정보<sup>5)</sup>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기에 법의 적용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22, 35쪽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치정보 중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일반법은 법이 미치는 범위에 제한이 없이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일정한 사항·사람·장소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는 법을 말함.

4)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화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위치정보법」 제2조 제1호).

5)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

| 참고 |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sup>6)</sup>

구 분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수법주체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정보사업자등
보호대상	공공/민간, 영리/비영리,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일반	개인위치정보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상호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일반법적 성격	위치정보에 대한 일반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적 성격

한편 「위치정보법」은 2021년 법개정을 통해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으로 정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과 관계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제2조 제1호 개정)하였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22, 8쪽 참조).

※ 측위: 이동성 있는 물건이나 개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위치를 측정하는 행위

즉, “전기통신설비<sup>7)</sup> 및 전기통신회선설비<sup>8)</sup>로 측위되는”의 의미는 기지국, GPS, Wi-Fi, Beacon 등의 측위설비로 수집된 정보이므로, 눈으로 파악한 장소정보,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주소 정보 등은 제외되지만, 부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더 이상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위치정보에 해당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22, 22쪽 참조).

6)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22, 36쪽 참조

7)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8)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들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신고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정보 서비스의 사용자(개인정보처리자)가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획득한 출퇴근 기록 정보도 위치정보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이용약관을 통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개인정보처리자가)가 소속 근로자로 부터 동의를 받을 때는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근로자(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서비스의 사용자(개인정보처리자)가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출퇴근 기록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이 정한 바에 따른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참고 | 개정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 예시<sup>9)</sup>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	내부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획득한 정보 ※ 다만, 단순한 내부 활용 시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주의
카드 결제 시 부수적으로 입수되는 가맹점 장소에 대한 정보	-
놀이공원 출입 및 놀이기구 이용 시 부수적으로 입수된 정보	-
피트니스센터 내 출입 및 운동기구 이용 시 부수적으로 입수된 정보	-
사용자가 직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획득한 출퇴근 기록 정보	-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자가 입주민의 공동현관 출입·출차 관리를 위하여 획득한 정보	-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	내부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획득한 정보 ※ 다만, 단순한 내부 활용 시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주의	부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보라도 제3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위치정보 활용 목적이 있는 정보 ※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의 ‘사업’에 해당함
-	요양시설 입소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하여 획득한 소재 정보	보호자 등에게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소재 정보
-	유치원 내 영·유아 이탈 방지 등을 위하여 획득한 소재 정보	부모 등에게 영·유아 이탈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소재 정보
학교가 학생의 출결 관리를 위하여 획득한 등학교 기록 정보	-	부모 등에게 학생 출결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등학교 기록 정보

「위치정보법」의 수범주체는 일반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지만,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 시 개인의 사생활권 또는 재산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 시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치정보법」 제15조).

즉, 「위치정보법」 제15조의 수범대상은 “누구든지”이므로, 위치정보사업자등뿐 아니라 일반개인에게도 위치정보의 수집 등에 대해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위치정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인위치정보 비동의 적법근거(「위치정보법」 제15조)

-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요청이 있는 경우
-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9)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22, 22~23쪽 참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주체인 직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동의 방법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나 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나, 동의 표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영 제17조 제1항): 2024.9.15. 시행

-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실질적인 조건을 대법원 판례 및 EU GDPR을 참조하여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장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5쪽 참조

한편,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시에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83쪽 참조). 다만, 적법한 사유 없이 디지털 장치 도입·설치 목적과 다르게 이를 근태 관리 또는 징계목적 등으로 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22쪽 참조).

### | 참고 |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판단 기준

#### ■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판단 기준

1. 이동성 있는 물건이 해당 물건 소지자의 이동과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  
※ 물건의 실사용자가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물건 소지자가 항상 소지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
2. 이동성 있는 물건에 부착된 위치수집장치의 목적이 물건의 위치 확인인지 물건 소지자인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인지 여부 등

#### ■ 물건 위치정보가 개인위치정보가 되는 예

(예1) 위치정보수집장치가 부착된 미술품을 운반하는 자가용 운전자를 개인위치정보주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택시에 위치정보수집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개인위치정보주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2)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이를 찾고자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애인의 현재 위치를 알고자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위치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개인위치 정보주체인 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84쪽 참조

### | 판례 | ‘개인의 위치정보’의 의미 및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참조).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 주제 II-5

### 보험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1. 질의 요지

보험회사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무조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 질의 배경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모두 빙칸으로 두고 정보주체에게 서명만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됨.

## 2. 답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 또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동의서에 수집 또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빙칸으로 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이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보험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 수집·이용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명확하게 알려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이 경우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을 것, ②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③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④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은 정보주체가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민감정보
    - 나. 제19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알리고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보험금지급 청구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구체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특히,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

1.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보험금 청구를 하려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아동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그리고 보험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3항).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할 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 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 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 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동의를 대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유족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법정대리인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법정대리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계약을 제외한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5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손해사정사 등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로서 보험회사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수탁받기 위한 “[표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보험회사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손해사정사 등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손해사정사 등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8조; 「보험업법」 제185조-제189조; 표준약관[생명보험,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신원보증보험]

# III

## 개인정보 제공·국외 이전

**주제III-1**

경매물건 또는 공실의 관리비 연체내역 제공

## 1. 질의 요지

관리사무소가 경매물건 또는 공실의 관리비 연체내역을 부동산 경매의 낙찰자 또는 공실의 매수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 배경

상가, 집합건물, 아파트 등의 공실률 증가와 관리비 연체율 증가로, 경매물건의 낙찰자(경매참가자 포함), 공실의 매수자 등은 사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관리비 연체여부를 모를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음. 이에 관리비 연체내역의 개인정보 해당성과 관리사무소의 해당 정보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 2. 답변

관리비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기에, 만약 관리비 연체내역에 소유자의 성명, 연체된 호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관리사무소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참가자에게 관리비 연체내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연체된 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한해 해당 호실에 대한 월별 연체내역만을 경매 낙찰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경매참가자에게 관리비 연체내역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익명 또는 가명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3. 이유

경매물건에 대한 관리비 연체내역은 연체된 호실을 통해 소유자 등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관리비 연체내역을 수집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과거 경락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원시취득자로서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는 판결(창원지법 1997.7.25.97나351)이 있었으나, 관리비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되며,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연체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부담도록 의무화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관리비 연체와 관련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에,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이와 관련해 대법원(2007다 67227 판결 등 참조)과 헌법재판소(2013. 5. 30. 선고 2011헌바201 전원재판부)도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므로, ‘경매로 취득한 자’도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에 포함된다.”라고 하여,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전용부분과 공유부분(예시):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2,3]

• 전유(전용)부분

구 分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닉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 공유부분

구 分	범 위
1. 건물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구조부: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li> <li>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li> </ul>
2.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li> <li>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응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 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li> <li>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li> <li>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li> </ul>
3. 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li> <li>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li> </ul>

한편, 2023년 3월 15일 개정되고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란 “요금 징수 및 정산, 채권추심, 소 제기 및 진행 등을 위하여 증빙 자료를 조사·확보하는 경우, 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방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업장

내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 등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존재(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91쪽 참고)”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공유부분에 대해 연체된 관리비를 수납할 목적으로 연체된 호실과 연체내역을 경매 참가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제3조 제6항). 또한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제3조 제7항).

#### | 판례 | 관리비 연체에 따른 단전조치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우,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관리주체나 구분소유자 등이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였는지,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구분소유자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8조

**주제III-2**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

## 1. 질의 요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회원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간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회원 사이의 거래를 통신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2. 답변

회원 간 거래를 하는 회원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상당한 횟수의 통신판매를 계속·반복하거나 계속·반복의 의사로 거래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이유

중고거래 플랫폼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인 “사이버몰”的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통신판매 중개”에 해당하고(「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중고거래 플랫폼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즉,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1.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통신판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신고사항〉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①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② 「부가 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단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월별 거래명세(판매 대행 자료)에는 ‘판매중개 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와 ‘판매중개 연월일·건수·

금액'과 같은 거래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8조 별지 제48호의5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18조 제2항 제2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련 명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신고를 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업”(業)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업”이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를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계속·반복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헌법재판소 2011. 3. 31. 2009헌바309 판결 참조)로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하여야 합니다.<sup>10)</sup> 그러므로 개인 또는 회원 간 거래를 하는 회원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횟수의 통신판매를 계속·반복하거나 계속·반복의 의사로 거래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보호위원회 제2022-118-043호 심의·의결 참조). 그 기준은 현행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제 취지에 따라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2조, 제20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10) “업무”란 직업상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12., 18쪽.)

### 주제III-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1. 질의 요지

개인정보 처리를 국외로 위·수탁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위탁자의 수탁자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지?

### 질의 배경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달 및 데이터 관련 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국외 위·수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2. 답변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의 형태로 위·수탁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국외 수탁자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외 이전 시 요구되는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외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이유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외 이전과 관련해, 온라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을 하나의 조항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포함)에게 원칙적으로 국외 이전을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동일한 법령상 의무(국외 이전 요건, 보호조치 등)를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 국외 이전 가능 사유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국외 제공, 위탁 및 보관 등과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제5항).

#### 참고 ▶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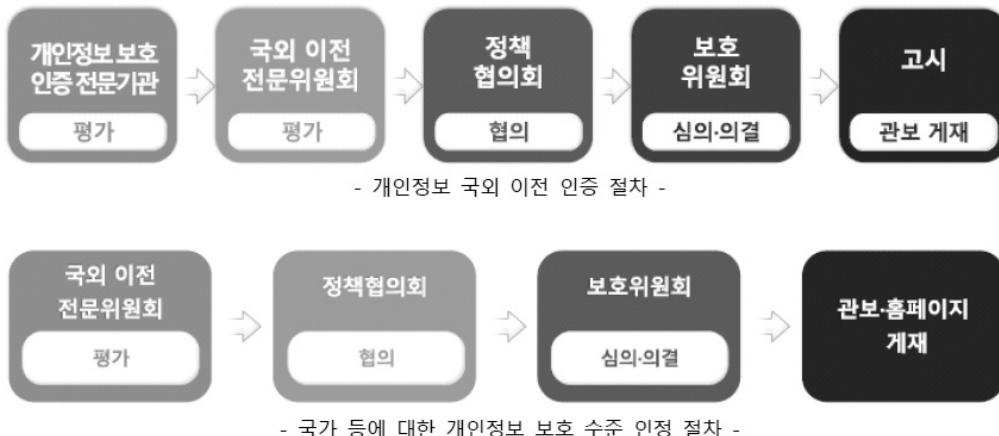
1.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참고 | 국외 이전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전후 비교 및 운영절차

■ 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개인정보 국외 이전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법 제17조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법 제39조의12)	개인정보처리자 (법 제28조의8) (온·오프라인 통합)
	요건	• 국외 제3자 제공 시 정부주체의 동의  * 제공(조회 포함)· 처리위탁·보관	• 국외 이전* 시 정부주체의 동의  * 제공(조회 포함)· 처리위탁·보관	• 국외 이전* 시 정부주체의 동의  * 제공(조회 포함)· 처리위탁·보관
		• 처리위탁·보관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시 동의 대체	•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한 경우  •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보호수준을 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운영절차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35쪽 참조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28조의 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

IV

## 개인정보 동의

**주제IV-1**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링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1. 질의 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링크)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 2. 답변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정보주체에게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3. 이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의”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말하고, 정보주체는 그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15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 제2항 제1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 제1호(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 제1항 제1호(민감정보의 처리)에 따라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 제1항 제1호(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②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③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④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민감정보
    - 나. 제19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

1.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모든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정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자율규제 장치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동의받는 사항 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담고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동의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할 수 있고,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주체는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중요 내용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게 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에 대한 선택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동의받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이용하여 정보주체 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 주제IV-2

약관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1. 질의 요지

개인정보 수집 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와 그 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라면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 질의 배경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 개정에 따른 동의 관련 제도에 변경이 있어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 2. 답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각각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점별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일반화 시킨 계약서를 말하기에, 이용약관을 통해 필수정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이용약관에 담을 경우, 이용자별로 개인정보가 필요한 목적과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한 번의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 수집의 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3. 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각각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102쪽 참조). 이는 특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463 결정).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으면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것도 수집·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고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회사가 다수의 이용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기에, 이용자 별로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시점이 다른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최소수집의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존의 필수동의 항목에 대하여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의 선택동의 항목에 대하여만 동의를 구하게 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습관적인 동의에 익숙해지지 않고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말함.

따라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특정하려면 기준에 어떤 것들이 필수동의 항목에 적합한 것이었는지를 참조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필수동의 항목은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로, 선택동의 항목은 ‘해당 서비스의 추가적 기능 또는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수집 동의가 요청되는 개인정보’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해당 서비스’란 ‘사업자가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안내·설명자료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로서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418쪽 참조).

즉,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존의 필수동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라거나 이용약관에 포함된 계약 내용이라 하여 무조건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하기만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이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집 제한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만 위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에(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 획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위와 같이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동의 획득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해석함이 법 전체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계약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강제해서는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해당 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도록 동의 절차를 개편하는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1쪽 참조).

| 참고 |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영 제17조 제1항): 2024.9.15. 시행

-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실질적인 조건을 대법원 판례 및 EU GDPR을 참조하여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장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5쪽 참조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해 수집이 필요한 사항은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표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해당하여 동의가 필요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선택동의는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에 의해 수집·이용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라면 선택동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1쪽 참조).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외 주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약관 심사에서 다음과 같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 조항**

- ①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의제 조항
-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 ③ 사전 통지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 ④ 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 ⑤ 과다한 개인 정보 수집 조항
- ⑥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 ⑦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 ⑧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
- ⑨ 부당한 환불 조항
- ⑩ 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위의 밑줄 친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④),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⑤), 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⑩)에서와 같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가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무효가 된 조항은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없었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계약 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불공정 약관(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 조항(예시)

**〈A사 계정 만들기 화면〉**

아래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A사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요사항을 포함해 개인정보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을 설명한 A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A사 서비스

###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아래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Google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요 사항을 포함해 개인정보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을 설명한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A사서비스를 사용할 때 A사서비스에서 수집 및 이용하는 데이터

- Google 계정을 설정할 때 제공하신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가 저장됩니다.
- 사용자가 YouTube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때 A사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활동에 관한 정보(예: 시청한 동영상, 기기 ID, IP 주소, 쿠키 데이터, 위치)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A사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A사 서비스 (예: 광고, 애널리틱스, B사서비스 등 영상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앱 또는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에 설명한 종류의

주소

동의



A사서비스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와 사용 방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고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정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 약관 시정 보도자료, 2019.03.14. 참조)

| 참고 | 「위치정보법」에 따른 이용약관 작성 시 정보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 개념: “이용약관”이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함
- 위치정보 수집 시 약관동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위치정보법」 제18조)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6.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시행령 제22조】

■ **위치정보 이용 시 약관동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통보에 관한사항【시행령 제23조】

■ **이용약관의 공개의무 대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이용약관 내용:** 이용약관에는 사업자의 상호 및 연락처,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의 이용요금, 개인위치 정보의 수집 동의 또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기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과 관련된 조건, 위치정보관리책임자(임원 이상)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에 관한 내용, 위치정보법상의 손해배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주의:** 「위치정보법」 제18조 제3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야 함
- **이용약관 변경명령:** 약관내용이 개인위치정보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출처: 위치정보법 해설서, 2022. 6., 68–69쪽 참조

한편,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치정보법」 제18조).

###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주제IV-3**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 1. 질의 요지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본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에게만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법정대리인 대상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를 직접 받는 정책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예: 온라인 학습사이트, 여행사이트, 게임사이트 등)가 증가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인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법정대리인에게만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 3. 이유

만 14세 미만 아동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주체이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됩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의 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요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 또는 설명 등의 요구 등 독립하여 유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법정 대리인은 아동이 향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아동과 충분히 소통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관련한 사항(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알린 후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 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 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법정 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인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사업자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V

개인정보 파기



**주제 V-1****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 보관 기준****1. 질의 요지**

○○회사는 새로이 가입한 회원에게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회원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할 때 동의를 받은 기간까지 그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배경**

○○회사는 회원 탈퇴, 제명, 계약종료,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소멸한 때에는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하는 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시기가 문제됨.

**2. 답변**

○○회사는 무료 택배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 반복적 회원가입 및 탈퇴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고객의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회사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원이 탈퇴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고객의 회원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사는 새로이 회원 가입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회원 가입 및 탈퇴를 하는 고객으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 또는 회원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회사는 반복적 회원가입 및 탈퇴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고객의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회원가입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복적 가입 및 탈퇴 회원의 관리”를 목적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하는 회원을 관리한다는 목적과 회원 탈퇴 후 필요 최소한의 보유 및 이용기간, 그리고 법령에 따라 다른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참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항목을 포함한다)
  - 5.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7.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9.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10.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1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2.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1.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공개(법 제22조 제3항)

3. 정보주체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법 제23조 제3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고정형·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25조 제7항, 제25조의2 제4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에 관한 사항(법 제26조 제8항, 제30조)(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제공(조회 포함)·처리위탁·보관] 목적으로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 공개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조 제2항)(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전자 우편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린 경우에는 예외로 함)(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사항(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2항)
8.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법 제31조 제3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그 밖에 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에서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가. 가명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법 제30조,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2022.04.29.) 62쪽)(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기 작성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있을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만 추가 가능)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 기간(선택)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5.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나.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하는 수집·이용하는 생체인식정보의 이용목적, 항목, 보유·이용기간, 이용자의 통제권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생체정보 가이드라인, 2021. 9. 31쪽.)(해당되는 경우에 한정)(국가기관, 공공기관을 위한 권장사항)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제21조, 제30조

## 주제V-2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록물의 파기 및 분리 보관

### 1. 질의 요지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해당 공공기록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파기 시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는?

#### 질의 배경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준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록물의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적용해 해당 목적 달성을 시 자체 없이 파기하는 등 법 적용에 혼선이 발생해,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 2. 답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된다면, 동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항 등이 정한 파기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른 관리 대상 기록물에서 해제되거나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기록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 만료 후 파기하여야 합니다.

###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도 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보유기간 달성 시 파기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항)

따라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된다면, 동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동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록물자료가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 | 참고 | 불필요하게 된 때

-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던 보유기간의 경과
-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서 인정된 수집·이용·제공 목적의 달성
- 회원탈퇴, 제명, 계약관계 종료, 동의철회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소멸
-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정산
- 대금 완제일이나 채권소멸시효기간의 만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139쪽 참고

#### | 참고 | 파기방법

- 전부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부분 파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 기타: 기술적 특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관계법령**

-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 제8조, 제19조
-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2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 주제 V-3

퇴직근로자 개인정보의 파기 및 분리 보관

## 1.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보관 기간을 연장한 후 해당 기간 경과 전에 정책적으로 파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제42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그 보유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기 시점 등에 관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됨.

## 2.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 보존의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지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보유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3. 이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여 그 개인정보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보유 기간의 산정은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제1항).

보유기간은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계속 보존

하여야 합니다(제42조).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의 종류와 그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의 종류와 그 보존기간의 기산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	보존기간의 기산일
근로자명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완결한 날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완결한 날
휴가에 관한 서류	완결한 날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개별 법령이 보유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습니다(「표준 지침」 제60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산정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하고(법 제30조 제2항), 그 보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그 보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보유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그 보유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①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의 목적, ② 연장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연장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제2항, 별표 1.

# VI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 주제 VI-1

## 사망자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 1. 질의 요지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적법한 근거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나, 정보주체가 사망한 경우 그 처리에 있어 유족과의 관련성을 띠는 경우 등 합법적인 활용영역에 대한 해석에 있어 혼선 발생

※ 현행법은 해석상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유족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2020. 10쪽 참고).

## 2. 답변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주민에게 개인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등록번호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자체로만으로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개인정보의 주체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망인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시(서울고등법원 2018 나2023207; 2019헌바72, 2019. 11. 28)를 고려할 때,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한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모든 활용이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정법은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에 관해 규정한 별도의 법령에 근거해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법」 등 관계법이 정한 바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용도(예: 불법 대포폰 개설, 마약매매, 메신저 피싱 등)로 쓰는 것을 금하고 있기에,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이유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에게 개인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로 생년월일, 성별을 포함한 13자리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개인식별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나목”은 개인식별 가능 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있기에, 이 중 개인식별정보에 대해 정의한 “가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sup>11)</sup>.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와 관련 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법령 조항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11)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 참고 |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연도/성별과의 관계 및 주민등록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sup>12)</sup>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함(「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의 생년월일 6자리 및 뒤 첫째숫자(출생연대와 성별)는 주민등록번호 고유체계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출생신고 시 국민이 국가에 신고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 열이기도 함.
- 출생연도/성별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라고 칭해야 할 것이며, 주민등록번호 뒤 첫째 자리 숫자는 '주민등록상의 성별'이라고 해야 할 수 있음<sup>13)</sup>.
  - ※ 주민등록번호의 최초 7자리 숫자는 국가에서 확인한 '생년월일 및 성별'을 나타내는 정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의 출생연월일 등과 다를 수도 있음.
- 주민등록번호 일부 정보(뒷자리 전체 또는 일부) 사용: 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만 수집·이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고유한 특성, 즉 유일성과 식별성을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1968년 최초 도입 당시												
1	2	3	4	5	6	-	7	8	9	10	11	12
특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성별		등록순서		
2020년 10월 이전 신규												
1	2	3	4	5	6	-	7	8	9	10	11	12
Y	Y	M	M	D	D	-	G	H	I	J	K	L
생년	월	일	-	성별	지역고유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2020년 10월 이후 신규												
1	2	3	4	5	6	-	7	8	9	10	11	12
Y	Y	M	M	D	D	-	G	H	I	J	K	L
생년	월	일	-	성별	무작위 숫자				검증번호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l)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제2020-103-007호)

12) 행정안전부,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2015, 16-17쪽 참조

13) 출생연도가 사실상 고유식별정보로 기능한다고는 볼 수 없고, 출생연도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와 같은 수준의 법률상 보호를 받아야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 한 바 있음(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만약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총조사·승인통계 작성 또는 행정자료 활용을 위해 처리하는 것은 통계법 시행령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sup>14)</sup>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계법 시행령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구체적인 이행 방안(예: 업무 위탁 시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 편)』, 2023, 14쪽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自然人)」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해당 정보의 특정 개인이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관한 해당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sup>15)</sup>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 법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인격권’으로서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능하고 사망자의 정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주체를 생존하는 개인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통계법 시행령」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4.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15) 망인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8 나2023207; 2019현바72, 2019. 11. 28)가 있음.

### | 참고 | 실정법에서의 유족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73조는 유족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배우자
  2. 자녀(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4. 손자녀(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며(제2조 제3호),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제63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는 주민등록번호 역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상속 등과 같이[예:「민법」 제181조(상속 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5편 상속 관련된 규정 등] 유족과의 관련성을 갖는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그 처리에 있어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하며(「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모든 국민에게 일련의 숫자 형태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서(현재 2015. 12. 23. 2013현바68등, 판례집 27-2하, 480),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주민등록법」 제1조).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의 부정 이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37조 별칙 규정을 통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제1항 제9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1항 제10호)<sup>16)</sup>” 등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16) 이 조문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행사하는 등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를 엄중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해 불법적인 용도(예: 불법 대포폰 개설, 마약 매매, 메신저 피싱 등)로 쓰거나, 사망자도 존엄성을 갖는 인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망자의 명예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용도로 주민등록번호가 쓰일 수 없으니 그 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특정 사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사망한 자의 정보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중 다른 사람에 의하여 함부로 훼손되거나 침해·도용·누설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49조에서는 이와 명백히 구분되는 ‘타인의 정보·비밀’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주고받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62조 제1호 내지 제3호), 형별법규에서 ‘타인’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적으로 하는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타인의 문서’에는 이미 사망한 자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된다고 판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한바 있어,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라 할지라도 관련법이 별도로 정한 바가 아니면 함부로 쓰일 수 없으니, 그 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2조, 제24조의2, 「주민등록법」 제1조, 제3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1년 4월 27일부터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

## 주제 VI-2

이벤트 등에서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 1. 질의 요지

경품에 당첨되어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게 되었는데, 업체에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처리 법정주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하고 있어 관련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됨

### 2. 답변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를 때, 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해당 경품 금액이 1건당 5만 원이하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1건당 1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당첨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에게 경품 당첨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를 통해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처리를 금지하고 제2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원칙을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유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이는 제24조의2에 정한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보호를 다른 고유식별정보(예: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보다 더욱 강화함으로써 관행적인 동의 절차에 따른 오·남용 방지와 유출시 발생할 수 있는 2차·3차의 피해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는 고유식별번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정한 각 호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품이나 상금 등을 「소득세법」에 따를 때, ‘기타소득’으로서 각각 비과세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라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 등 그 적법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경품과 관련한 비과세 사유를 살펴보면, 경품은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따를 때,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어, 건별로 5만원을 초과해야만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 이하의 경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상금의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6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양식은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이 면제되어(「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경품의 경우 1건당 5만원 이내의 금액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며, 상금의 경우 1건당 1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의 기타소득에 해당

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경품 또는 상금에 대해서 1건당 5만원 이상 또는 1건당 10만원 이상이 아니면 적법한 근거 없이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 결정례

## 현법재판소: 연계정보 생성행위 위헌확인 등(2021헌마297)

청구인들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2012. 8. 8. 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48호, 이하 ‘본인확인기관고시’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연계정보 생성 모듈’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하였으므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연계정보를 생성·발급하였거나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생성·발급·처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한 주체는 본인확인기관이다. 피청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연계정보 생성 모듈’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청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본인확인기관은 지정신청기관의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나(심판대상 조항, 본인확인기관고시 제3조 내지 제11조),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연계정보를 이용한 모든 행위를 다툰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연계정보를 이용한 주체, 날짜, 이용 경위 등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어떠한 고권적 작용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연계정보 생성 등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84조, 제164조 제1항 제6호, 제164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호, [별지] 제23호 서식(4)

# VII

## 개인정보 위·수탁

**주제VII-1**

행정상 위임·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 1. 질의 요지

공공기관이 행정상 위임·위탁 관계에 근거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 질의 배경

공공기관이 「정부조직법」 제6조 및 개별 법령 등에 근거한 위임·위탁관계에 따라, 개인정보가 수반된 정보를 처리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2. 답변

공공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임·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이유

공공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 제1호).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 제2호). 즉, 행정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위탁”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권한의 위임은 그 권한 가운데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위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의 권한 가운데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합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 제5호).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 가운데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반드시 그 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하고, 법률에서 위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모법(母法)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위탁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위탁의 법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으므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6조

## 주제VII-2

## 행정기관의 민간에 대한 개인정보 위·수탁

**1. 질의 요지**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개인정보 위·수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과의 관계는?

**질의 배경**

행정기관이 민간기관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2. 답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가 규정하는 업무위탁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서의 작성,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공개, 수탁자 교육 및 감독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이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제3항).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 제1호). 이에 대하여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 제2호).

행정기관의 위임·위탁사무는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만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을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수탁기관의 수임·수탁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을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합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3조).

개인정보에 관한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고,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8조).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9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민간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 제3호). 행정기관이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에 한정합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민간위탁이 가능한 행정사무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행정사무인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사무를 구분하여 사무 위탁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경우 위탁 범위에 대한 재검토, 위·수탁 시 안전 조치 및 감독 강화, 위험요인 발생 시 책임 명확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 후 행정기관은 민간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민간수탁자가 위·수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2020. 12, 6-10쪽 참조).

위탁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14조). 위탁(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합니다. 위탁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16조).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행정 위임위탁규정」 제15조).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제2호,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제16조

# VIII

## 가명정보의 처리 등

## 주제VIII-1

가명처리 목적의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

## 1. 질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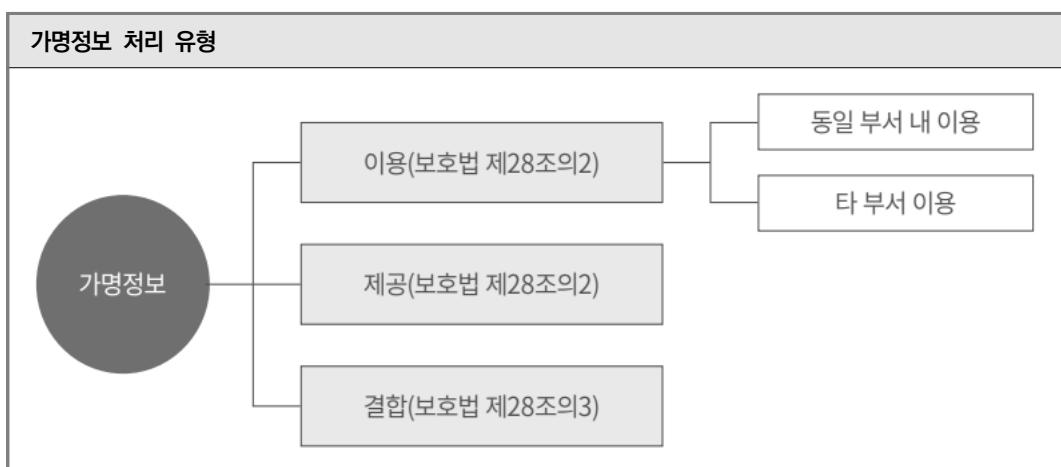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활용 목적으로 제3자인 카드회사 등에 가명처리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2. 답변

가명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처리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 외에는 가명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재식별금지조항(28조의5)을 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를 때, 이 재식별금지조항은 최초로 가명 처리를 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재식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경우에 재식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

### 3. 이유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제18조 제2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집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2023. 10. 26. 2020현마1477등).



※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 참고 | 가명처리 vs. 가명정보 처리

-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과정
- 가명정보 처리: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를 이용·제공 등 활용하는 행위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2.04.29.), 10쪽 참조

## | 결정례

## 가명정보의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처리 가능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7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을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중 하나로 두고 있다. 가명처리가 정보주체의 식별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정보주체의 법적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조치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정보의 재식별은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로서, 재식별금지조항은 이와 같은 재식별 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재식별금지조항은 최초로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재식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등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에 비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최초 가명처리자에 대해서 재식별을 허용하게 되면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완화된 채 가명정보로서 처리되던 정보를 다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로 되돌림으로써 정보주체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초 가명처리자에 대해 예외를 두는 방법으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현재 2023. 10. 26. 2020헌마1477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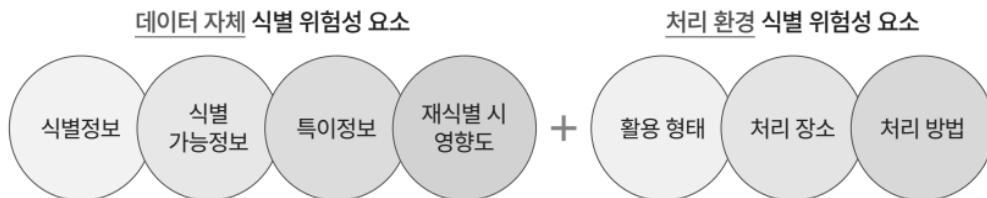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정보주체에 대한 식별가능성, 복원가능성을 높여,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에,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며, 그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3절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 제3자 제공이 가능토록 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결합을 보호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른 결합 및 반출 환경을 조성토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안전한 기반 하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재식별금지에 관한 조항(28조의5)을 두고 있는데, 이 재식별금지조항은 최초로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재식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초 가명처리자에 대해서 재식별을 허용하게 되면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완화된 채 가명정보로서 처리되던 정보를 다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로 되돌림으로써 정보주체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에 재식별금지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현재 2023. 10. 26. 2020현마1477등).

그러므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 외에도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들은 명칭, 종류, 형태나 내용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3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제공대상이 되는 가명정보와 결합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목록 등을 확인하여 가명처리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명정보를 합법적인 목적으로 처리하는지와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222-223쪽 참조).

#### | 참고 | 위험성 검토

- 위험성 검토 : 위험성 검토는 가명처리 대상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을 분석·평가하여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며,
  - 식별 위험성은 1)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과 2)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함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2.04.29.), 쪽 참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활용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카드회사 등에 가명처리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가명정보를 데이터 활용 목적으로 제3자인 카드 회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3절을 통해 제한하며, 도입한 가명정보 제도가 무분별한 가명처리로 데이터 생태계를 해손하여 결과적으로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등 제3장 제3절

### 주제VIII-2

#### 가명처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탁자 전달

## 1. 질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처리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구별하여야 하는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 답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의 개인정보 전달에 해당하며,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습니다.

## 3. 이유

개인정보에는 가명정보가 포함됩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관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이를 반대해석하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관 등의 목적이 아닌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 한다)
-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제3자”는 정보 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가명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가명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판례 | 제3자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1조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4조의2 제1항, 제25조, 제71조 제3호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수탁자를 포함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6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록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3호).

한편, 판례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탁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탁받아 처리한 위탁자 명의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제3자 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수탁자는 제3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을 받을 수 없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1-231호, 제2022-007-041호). 그 결정례의 요지는 수탁자로서 수탁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위탁자의 이익이 아닌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면, 제3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범위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제3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며,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결정례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1-231호(2018. 10. 15.)

[경기도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업무의 광명경찰서 위탁에 관한 건]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7조 및 제18조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하여 처리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운영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인정보인 영상정보를 주로 제공받게 될 광명경찰서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기도 광명시의 수탁자가 될 경우 광명경찰서는 실질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결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필요성만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 결정례

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07-041호(2022. 4. 27.)  
[대한한의사협의 통계작성 등을 위한 한의 의료기관 보유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제3자 제공’과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처리위탁’을 구분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 협회가 한의 의료기관의 가명처리 업무를 맡을 경우 가명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추후 가명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지위에도 있게 됨
  - 이 경우 보험료율 산출이라는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협회는 자신이 제공받을 정보의 제공 절차에 스스로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 없이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와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지위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 우려가 존재하는 바,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정하여 제공받을 경우 정보주체의 보호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여 이를 허용하기 어려움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64조의2 제1항 제6호, 제75조 제2항 제13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60조의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9.)

## 주제VIII-3

## 가명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위·수탁

**1. 질의 요지**

수탁자가 수탁 받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 목적(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해 가명처리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2. 답변**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업무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재식별금지에 관한 조항(제28조의5)을 두고 있는데, 이 재식별금지조항은 최초로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재식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탁자에 대해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기에, 수탁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지 않도록 수탁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3. 이유**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 따라서 수탁자가 업무상 수탁 받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가명처리 목적(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해 가명처리하거나 나아가 익명처리 하는 것은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와 위탁자,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도 법 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수탁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8항 수탁자 준용 규정에 수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과징금(제64조의2)·형벌(제71~73조)·과태료(제75조) 규정에 개별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규정을 추가함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재식별금지에 관한 조항(제28조의5)을 두고 있는데, 이 재식별금지조항은 최초로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재식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초 가명처리자에 대해서 재식별을 허용하게 되면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완화된 채 가명정보로서 처리되던 정보를 다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로 되돌림으로써 정보주체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에, 재식별금지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현재 2023. 10. 26. 2020헌마1477등).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범위에 다시 위탁받은 제3자도 포함하도록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하고, 위탁자는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이 때 다시 위탁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있는 경로 등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재위탁이 반복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어 다시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되 다시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85~86쪽 참조).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 제28조의2

## 주제VIII-4

## 가명정보의 파기

**1. 질의 요지**

가명정보가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기 의무가 있는지?

**질의 배경**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은 법 제28조의7(적용범위)을 개정해, 법 제21조의 개인정보 파기 규정을 가명정보 처리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이로 인하여 가명정보의 파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2. 답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가명정보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가명정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자체 없이 그 가명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추가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결합(제28조의2, 제28조의3)하는 때에는 처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4 제2항). 또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 | 참고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개념

- “통계작성”이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한 수량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1쪽).
-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8호).
- “공익적 기록보존”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3쪽).

그렇지만,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결합(제28조의2, 제28조의3)하는 때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 〈적용 제외 규정〉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1항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시행일 미지정)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결합(「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 한다)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가명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제21조 제1항). 이것은 개정 이전의 법률에서 가명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의 파기”(제21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던 것을 개정한 것입니다(구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제28조의7). 그러므로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적용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보유기간 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더 이상 그 가명정보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체 없이 그 가명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 참고 ▶ 파기방법

- 전부파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일부파기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전부파기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기술적 특성으로 전부파기 및 부분파기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항·제3항, 제28조의7; 「구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제28조의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 IX

## 안전성 확보조치

**주제IX-1**

단체메일 발송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1. 질의 요지

상담자의 나이, 가족관계와 학력, 지도교수 또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및 그들에 대한 평가, 연애 성향과 이성관, 한국 사회 및 역사와 종교에 대한 관점 등이 포함된 상담 메일을 단체메일로 송부하여 상담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합니까?

### 질의 배경

상담자의 인적 사항과 상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을 단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 환기가 필요함.

## 2. 답변

상담자의 나이, 가족관계와 학력, 지도교수 또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및 그들에 대한 평가, 연애 성향과 이성관, 한국 사회 및 역사와 종교에 대한 관점 등이 포함된 상담내용은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한층 보호되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을 단체메일로 상담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전송한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합니다.

## 3. 이유

상담내용이 상담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단체메일로 전송되는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즉, 상담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7호).

####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①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 유출이 된 시점과 그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③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2항).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7호).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대상〉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렇지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①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 유출이 된 시점과 그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③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75조 제2항 제16호·제1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9조, 제40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 주제IX-2

해킹 등 유출 사고 대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1. 질의 요지

사용자 계정이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는?

#### 질의 배경

핀테크업체의 사용자계정이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됨. 해당업체는 비밀번호작성규칙에 따라 비밀번호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바꾸도록 안내하였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함

### 2.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와 이를 근거로 마련한 세부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취급자와 정보주체(이용자)를 구분해 각각에 대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안전한 관리방안으로는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로그인 횟수 제한 정책의 경우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5조 제6항에 따를 때, 권한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로그인 시에 적용되었으나, 계정 도용 및 불법적인 인증시도 등의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주체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만 접속을 허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2024년 9월 15일 이후부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로그인 시에도 정당한 접속권한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횟수 제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PbD관점에서, 정보주체의 접속 시 불편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해당 조직의 관리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접속횟수 제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이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나.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
  -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주기적 간이·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개인정보호법」의 개정으로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며, 구법체계 내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율하던 (구)「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고시)는 폐지되고, 수범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원화된 해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 판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의미

- 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응용프로그램 등의 포함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5항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검색, 이용과정 등 데이터베이스시스템(DBS)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응용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55220 판결).
- 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 서버 등의 포함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검색, 이용과정 등 데이터베이스시스템(DBS)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 서버 등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는 접근권한 관리와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제5조 제5항),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로그인 횟수 제한 정책의 경우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5조 제6항에 따를 때, 권한있는 개인정보 취급자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로그인 시에게만 적용되었으나, 계정 도용 및 불법적인 인증시도 등의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주체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만 접속을 허용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15일 이후부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로그인 시에도 정당한 접속권한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횟수 제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PbD관점에서, 정보주체의 접속 시 불편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해당 조직의 관리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접속횟수 제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으로

비밀번호 작성규칙, 변경주기 등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토록(고시 제5조제5항)하고 있으므로, 비밀번호 외에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토록 하고, 비밀번호를 인증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시는 제6조를 통해 접근통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이를 위해 관리자는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반복적으로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할 경우 입력 횟수를 제한하고 시스템 이용을 일시 정지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 49쪽; KISA,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 제5장 등 참조).

#### 참고 계정 도용 및 불법적인 인증시도 통제방안 예시

구 분	설 명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6항</li> </ul>
접속 유지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속 후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세션 타임아웃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5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10항</li> </ul>
동시 접속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 계정으로 동시 접속 시 접속차단 조치 또는 알림 기능 등</li> </ul>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외 IP주소 등 등록되지 않은 IP주소에서의 접속 시 차단 및 통지</li> <li>주말, 야간 접속 시 문자 알림</li> <li>관리자 등 특수권한 로그인 시 알림 등</li> </ul>

- 업무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싱글사인온(Single Sign-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정 도용 시 피해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강화된 인증 적용, 중요 시스템 접속 시 재인증 요구 등 추가 보호대책 마련

출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95쪽 참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합니다.

#### 참고 ▶ 비밀번호 작성규칙 예시(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적으로 강제화 필요)

##### ■ 비밀번호 작성규칙 예시(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적으로 강제화 필요)

구 분	내 용
조합 규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li> <li>또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li> </ul>
변경주기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번호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li> </ul>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 설정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적인 숫자,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ID와 비슷한 비밀번호 사용 제한 권고</li> </ul>
동일한 비밀번호 재사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번호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 재사용 제한 권고</li> </ul>

##### ■ 비밀번호 관리절차 예시

- 시스템 도입 시 설정된 초기 또는 임시 비밀번호의 변경 후 사용
- 비밀번호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
-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비밀번호 기록·저장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기록·저장하여야 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대책 적용
- 침해사고 발생 또는 비밀번호의 노출 징후가 의심될 경우 자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설정 시 본인확인 절차 수행
- 관리자 비밀번호는 비밀등급에 준하여 관리 등

출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96쪽 참조

다만,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마련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및 권리행사 방안 마련 없이, 비밀번호 관련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한다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 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제1조 참고), 정보주체에게 불편을 주는 환경 구현 또는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조직의 사업 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그 당시의 최신보안 기술 등을 고려해서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비밀번호 미갱신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야 비로소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이용자의 비밀

번호 재설정(또는 변경) 등의 유도를 위한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위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제8조 제2항).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8조 제3항).

#### | 판례 고시에서 정하는 조치 기준을 준수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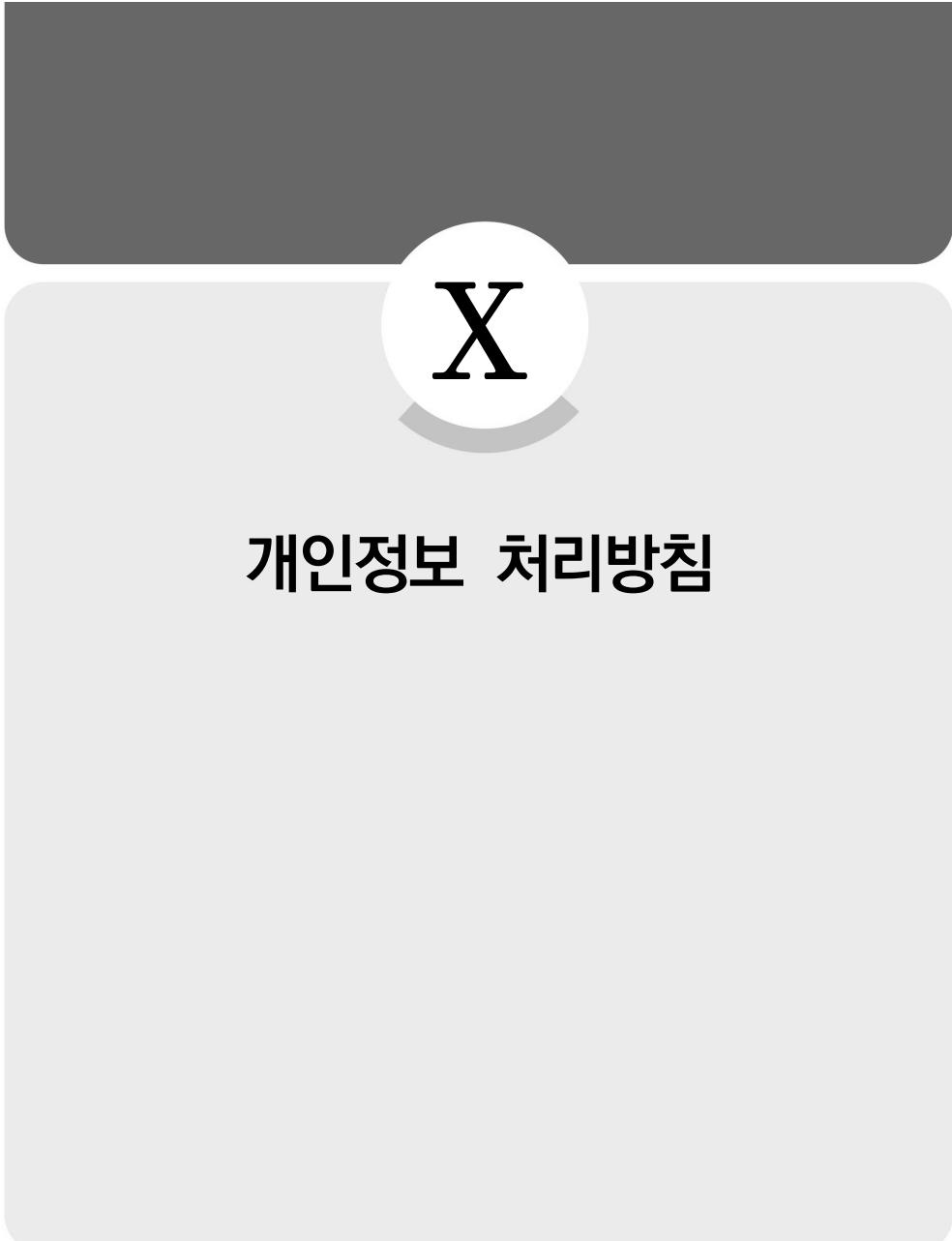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 | 판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현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5항, 제6항, 제8항



X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제X-1**

학원 등의 개인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 1. 질의 요지

학원 등이 전국단위의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경진대회 주최측 등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학원(또는 여행사, 온라인 쇼핑몰) 등이 일회성 이벤트 등의 행사를 개최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예: 제3자 제공/위탁 등)하고 있지만,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법한 처리 절차 안내 및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2. 답변

학원, 여행사, 온라인 쇼핑몰 등이 정보주체인 이용자(예: 학원생 등)를 상대로 일회성 이벤트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면, 그 행사가 제3자(주최측 등)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이든, 학원 등이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앤벌제작, 물품 배송등과 같은 수탁업체를 두는 경우이든, 모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이유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274~276쪽 참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조 제5항 및 제30조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규정된 처리방침 기재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함)
5.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포함)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함)
7.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함)
14. 법 제15조 제3항과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함)
15.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함)

**<가명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sup>17)</sup>**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선택)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6.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16. 생체인식정보의 이용목적, 항목, 보유·이용기간, 이용자의 통제권 행사 방법 등(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함)
 

※ 공공기관이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수집·이용하는 생체인식정보의 이용목적, 항목, 보유·이용기간, 이용자의 통제권 행사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7. 제23조 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18. 국외 이전 시 위탁/보관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19.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하는 경우만 해당)
  20. 기타 관련 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 등에서 공개도록 안내하고 있는 사항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학원 등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자(주최측 등)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학원 등이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한 사항(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재수탁하는 경우 포함) 등을 모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참고 | 제3자 제공(예시)

#### ■ 학원·교습소 분야

- 학습·교습소가 그룹사로 운영되는 경우 자회사의 통합회원 가입을 위해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제공
-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기 또는 교재 등을 판매하기 위해 타회사에 학생의 정보를 제공
- 해외 유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여행자 보험계약, 비자업무, 유학생 탑승예약 등을 위해 학생의 정보를 대행사에 제공

#### 작성 예시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 학원>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 학원>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사 통합회원 가입	* 필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선택: 주소, 관심분야, 가입경로	회원 탈퇴 시, 이용목적 달성을 시까지
<제3자 제공업체> (더보기)	<제공 목적>	<제공항목>	이용목적 달성을 시까지

#### ■ 여행업 분야

- 여행자 보험 가입
- 여행지에서 이용하는 체험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예약
- 항공권, 기차, 선박, 숙박, 렌터카 예약을 위한 여행자 정보 제공

## 작성 예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 여행사>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 여행사>은(는) 다음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보험사> (더보기)	여행자 보험 가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항공사/ 선박회사 등> (더보기)	항공권 예약 및 출국가능여부 파악	성명(한글/영문), 성별, 연락처, 여권정보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

③ <○○ 여행사>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외이전 여부	보유 및 이용기간
<숙박업체> (더보기)	숙박예약 진행 / 확인	성명(한글/영문), 연락처	업체별 상이	수집일로부터 ○○일 후 파기
<렌터카 업체> (더보기)	렌터카 예약 진행 / 확인	성명(한글/영문), 연락처	업체별 상이	수집일로부터 ○○일 후 파기
<현지 여행사> (더보기)	투어, 공연, 상품배송 예약·환불	성명, 휴대폰번호	국외이전	수집일로부터 ○○일 후 파기
<대사관> (더보기)	비자발급	성명(한글/영문), 성별, 생년월일, 여권(여권번호, 유효일자)	국외이전	수집일로부터 ○○일 후 파기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참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의 신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한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대부분의 처리방침이 획일적이고, 텍스트 나열 등으로 인해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오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 처리방침 평가제도: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용이성, 접근성 등을 평가여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입한 평가제도

### | 참고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비교

####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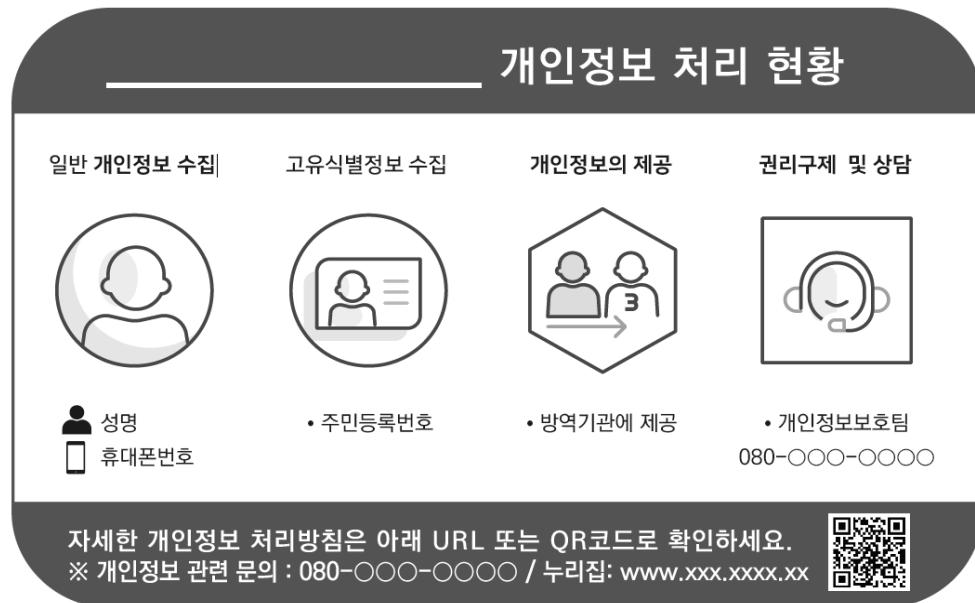
구분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을 정보주체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 내부 정책 등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세부적으로 설명</li> </ul>
포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주체가 확인하여야 하는 핵심사항(기호 활용 시 포함이 권장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생체정보,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등 포함</li> </ul> </li> <li>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li> <li>③ 개인정보 고충처리 부서 정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하고자 하는 추가 사항</li> </ul>

■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핵심 사항을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주요 처리사항을 기호로 표시하는 것으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요약 형태로, 이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내용의 공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 기호(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주요 내용이 표시되는 방식



■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간이형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예시



■ 예약 접수 문자 발송 시 추가 발송

[ 활용 예시(이미지 전송)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참조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 주제 X-2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 1. 질의 요지

방송사가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시청자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상담 목적으로 보험회사의 전문상담사에게 그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재무설계 방송을 표방한 방송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보험회사의 협찬을 받은 보험판촉 프로그램으로서 무료상담을 받으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협찬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2. 답변

시청자에게 보험설계사와의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고 알리고 있을 뿐, 시청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고,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위하여 시청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합니다.

### 3. 이유

A방송사는 재무전문가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재테크 회사인 B사에게 제공을 하였고, B사의 보험설계사가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달리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 마케팅에 이용하였습니다. A방송사는 상담받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B사에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항). 동의를 받을 때에는 ①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②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③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④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B사가 당초 A방송사로부터 재무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험 상품의 권유·판매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합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또한, B사가 A방송사의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하여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라는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7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는 서비스 홍보 및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 판례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려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는 명확한 인식 하에 해당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참조).

A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을 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방송사의 전체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B사 또한 A방송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고, 서비스 홍보 및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리지 않았으므로 과징금의 부과는 물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제75조 제4항 제3호).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64조의2, 제75조

# XI

## 개인정보 열람

**주제XI-1**

수술실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열람

## 1. 질의 요지

자신의 수술장면이 담긴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열람 거부가 가능한지?

### 질의 배경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이 발생된 사람이 자신의 수술장면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필요함.

## 2. 답변

자신의 수술장면이 담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그 열람 사유를 검토하여 그 열람이 허용되는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이유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별표 7의2), 수술실 촬영은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0).

####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서는 안 된다.
- 마.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 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촬영이 허용되는 수술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수술 장면의 촬영을 위하여서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 제1항).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제2항).

####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

1.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2. 환자 본인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도록 함께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와 함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로부터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를 제출받아 녹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확인한 후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부가된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중 응급으로 의료인 등이 교체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녹음 동의를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이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녹음을 중단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3).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촬영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요청한 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 제4항).

#### 〈촬영 거부 사유〉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원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 ①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우
    - 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 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 제2항 제3호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원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제39조의11 제5항 제4호에 따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② 법 제3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행위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촬영 거부사유 가운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촬영 거부사유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 제1항).

#### 〈촬영 거부사유의 구체적 기준〉

거부사유	기준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 제5항 제4호에 따라 촬영 요청 처리 대장에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함.

촬영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촬영을 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촬영 요청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 제6항).

#### 〈촬영 요청 처리대장의 필수사항〉

- 1. 촬영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 2. 촬영 요청의 내용
- 3. 촬영 실시 여부
- 4. 촬영 요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녹음 요청의 내용 및 녹음 실시 여부(제39조의13에 따른 녹음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열람하려는 사항〉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의료법」은 수술장면이 촬영된 영상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열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수술장면이 촬영된 영상정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이 허용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

### 〈수술 장면 열람 허용 사유〉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즉,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 및 법원(시행규칙 제39조의15 제1항)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므로 후유증의 발생을 입증하기 위한 수술장면이 담긴 영상정보를 본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 열람 허용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열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6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 등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 판례 |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 14166 판결).

열람 허용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자는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 제2항).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자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 즉, 수사기관 및 법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각 정보주체의 「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20호의6 서식의 영상정보 열람·제공 동의서

열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열람의 방법을 통지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 제3항).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하게 할 때 열람을 요청한 자임을 관계 서류나 증표로 확인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 제5항).

열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한 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 제4항).

**<의료기관의 장의 열람 요청 거부 사유>**

1.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자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 제2항)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8조의2 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촬영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상정보가 멸실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촬영일부터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 제1항·제2항·제4항).

### 〈영상정보 삭제 금지 사유〉

1.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예정임을 이유로 별지 제20호의5 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와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절차 준비 및 진행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또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종료일까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 제3항).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 「의료법」 제38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제39조의13, 제39조의15-제39조의 17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3. 9. 22.>

##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

요청인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내용	환자성명	생년월일 또는 환자등록번호
	수술일시	수술명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술 장면의 활력을 요청합니다.

卷之三

윤철인 (서명 또는 이)

유의사항

1.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에는 활용하지 않으며, 녹음은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활용한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다.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요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가. 활용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 나. 환자 본인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2023. 9. 22.>

##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

요청인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의료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1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기능의 사용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을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의료인 등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음 없이 수술이 진행될 수 있으며, 수술 진행 중 응급으로 의료인이 교체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녹음 동의를 하지 않은 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녹음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촬영한 영상정보와 녹음파일의 열람·제공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신설 2023. 9. 22.>

##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

정보 주체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주 소	직책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형태,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항목	[해당 수술 장면 촬영 중 음성정보(해당 수술의 정보도 함께 기재)]
	목적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등)
	보유·이용기간	[영상정보 보관 기간 (30일 이상)]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주제XI-2**

제3자의 부당 이익 침해와 개인정보 열람 제한 사유

## 1. 질의 요지

정보주체가 제3자와 수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이유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정보주체가 제3자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고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2.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자와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고, 열람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수사 또는 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이유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4항). 또한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42조 제1항).

**열람 제한·거절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정보주체와 제3자와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열람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수사 또는 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열람권 행사 이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제3자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예: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이 없는 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주체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결정례****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열람 거절이 가능한지 여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와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점, 개인영상정보에 포함된 제3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주체 외의 자는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제3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제3자는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 수단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가 보호 조치된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특수한 주관적 사정을 이유로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 판단된다. 이에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상 청구 목적이 오로지 제3자의 이익을 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당해 열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가 보호조치된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14-223호).

이처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의적으로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제3자 제공현황이 수사 대상자에게 노출된다면 증거인멸 등 수사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하는 당해 수사기관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에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표준지침」 제31조 제2항)

한편, 정보주체가 물품의 도난, 분실 등의 이유로 CCTV 열람을 신청하며, 시간과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고,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하는 날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영상자료를 확보한다면,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가감 없이 노출될 수 있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sup>18)</sup>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사전에 공개한 열람절차와 방법에 따라 열람을 실시하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취한 후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한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열람요구자가 비용을 부담도록 규정(다만, 시중에 보급된 비식별조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열람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해석례」 67 참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의 절차와 방법을 마련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정보주체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을 위한 목적과 최소한의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 열람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18) 국가인권위원회, 2017. 9. 28.자 결정 16진정0464200

**| 판례 |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받고자 할 경우 영장주의 준수 필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정보의 제공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2조 제6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수사기관에 그러한 트위터 정보를 임의로 제출한 것은 위법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으나, 이를 기초로 취득한 증거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 표준지침」 제31조 제2항